

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행정절차법」 제26조(고지)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(사용허가 취소)와 관련하여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에 있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본 공사송달은 2024. 9. 4.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024년 8월 14일

부산시설공단 이사장

- 제 목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 8. 14. ~ 9. 4.(21일간)
- 처분당사자 및 처분내용

당사자	주 소	처분 원인	처분 내용
김○철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○○○-○, 202호	비콘그라운드 쇼핑그라운드 L111호 사용료 체납	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(2024.7.31.부)

- 처분근거(법령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(사용허가의 취소) 제1항 제5호
-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) 제1항 제1호

4. 유의사항

-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
-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사항: 부산시설공단 비콘그라운드사업소 배연희(☎051-519-0204)